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퇴직연금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 예금 약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퇴직연금감독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제3조 취급대상

이 예금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계약기간

- ① 이 예금은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또는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또는 『만기 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6개월, 1년 이상 5년 이하 연단위로 합니다.
- ③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 연단위로 합니다.
- ④ 만기 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은 31일 이상 5년 이내에서 만기일을 자유로이 정합니다.

제5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원이상으로 합니다.

제6조 만기처리방법

-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1.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사용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2. 「만기 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사용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3. 전 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예금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재예치 의사 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별도 의사표시에 따라 정합니다
- ②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
 1.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2.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제6조의 2 재예치 기준일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하고,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

제7조 적용이자 및 이자계산

- ① 이 예금은 해지 사유에 따라 신규일(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또는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을 적용하며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 ② 이 예금의 만기에는 계약기간별 약정이자율(만기이자율)을 적용하고, 만기일 이전에 제8조 사유로 특별중도해지(분할인출)하는 경우에는 제8조 이자율을 적용하며, 그 외 사유로 일부해지 (분할 인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 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
- ③ 예금의 만기 후 이자율 적용은 불가 합니다.

제8조 특별중도해지(분할인출)사유 및 적용이자율

특별중도해지(분할인출) 사유	특별중도해지(분할인출) 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의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정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수탁자의 사임 □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계약이전 □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가입자 제도 전환 □ 가입자의 사망 □ 퇴직급여의 연금지급을 위한 하나은행 내 교체매매 □ 연금형태의 지급 사유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개인형IRP에 한함) □ 가입자의 해외이주(개인형IRP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1년 미만 :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자율 □ 계약기간 1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기간 1년 미만 :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1년제 약정이자율 • 경과기간 1년 이상¹⁾ :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경과기간별 경과년수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수수료의 납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p>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적용된 이 예금의 이자율</p>

1) 경과기간별 경과년수 : 아래 예시와 같이 산정

예시) 경과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경과기간별 경과년수는 1년임

제9조 분할해지

-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해지가 가능하며, 가입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 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위한 일부해지의 경우에는 전항의 일부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3.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

제10조 거래제한

이 예금은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불가하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거래방법

- ① 이 예금은 예금주와 은행간에 전문(電文)으로 거래하므로 통장 실물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 ② 이 예금 계좌의 해지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예금자보호

- 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B)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부 칙>

본 특약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본 특약은 2011년 05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부 칙>

본 특약은 2011년 1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부 칙>

본 특약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부 칙>

본 특약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부 칙>

본 특약은 2016년 06월 07일 이후 가입하거나 이 예금이 재예치된 가입자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부 칙>

본 특약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규정)

제6조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영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자동재예치 됩니다.